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4. 4 (월) 배포시 부터		
배포일시	2011. 4. 4 (월)	담당부서	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
담당과장	안세준 부가가치세제 과장	담당자	이 종 수 사무관(2150-4231) 권 성 모 사무관(2150-4233)

「농림특례규정·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

□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·축산업용 기자재 확대, 내국신용장 등을 On-line으로 발급시 서류제출 의무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

○ (개정대상 시행령) 농림특례규정*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총 2개 세법 시행령

*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

○ (향후 추진일정) 입법예고,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(4.28) 및 국무회의(5.3) 상정 후 늦어도 5월 초순에 공포할 예정임

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▪ 농림특례규정(2150-4233)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2150-4231,4241)

<별첨> 「농림특례규정」·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개정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

「농림특례규정·부가세법 시행령」 개정 주요내용

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·축산업용 기자재 확대

*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는 '10.11.17 기 발표 사항

- (현 행) 농민이 농업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(현재 20개 품목)와 축산세척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(현재 11개 품목)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
- (개 정) 한·EU FTA 체결 등에 따른 농·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기자재 2개 품목*과 축산업용 기자재 10개 품목** 확대
 - * 농산물 저온저장고, 농업용 환풍기
 - ** 인공수정 주입기, 인공수정 주입용기, 정액 희석재, 축산용 인큐베이터, 축산용 출하돈선별기,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, 축산용 쿨러패드, 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, 축산용 워터컵, 트라이바
- (적용시기)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

② 내국신용장 등 On-line발급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납세협력부담 완화

- (현 행) 내국신용장 등을 On-line발급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VAT 영세율* 적용
 - *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(부가령 §24 ②)
- (개 정) 전자발급(On-line)시 명세서 제출로 영세율 적용(사본제출 폐지)
 - ※ 은행 창구방문을 하는 Off-line발급방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- (적용시기) 2011. 7. 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